

2025 이패스 자동차보험(대인) 추록(2024.11.28. 현재)

- 2024 교재 변동사항 -

p	삭제	추가	수정	비고
75		<p>기출 기명피보험자A가 자기 소유의 피보험자동차에 아내B를 태우고 휴가를 가던 중 운전 부주의로 피보험자동차가 낭떠러지로 추락하면서 아내가 현장에서 사망함.</p>		날개
76			<p>예를 들어, 갑이 운전하다가 차량이 전복되어 아들 병이 사망하고 엄마인 을은 부상을 입은 경우 갑에게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 의무가 공존하게 되고 이 경우 혼동이 적용된다. 아들 병의 실제손해액이 200,000,000원이고 책임보험금 한도가 사망 1급으로 150,000,000원인 경우 책임보험금 한도로 혼동을 적용할 경우 75,000,000원이 되고, 실제손해액인 200,000,000원 기준으로 혼동을 적용하면 100,000,000원이 된다.</p>	핑크색박스
95	110			라. 대인배상
110		<p>기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자동</p>		날개

		차보험 담보별 보상에 미치는 영향 기출		
111		<p>근로자가 출퇴근 중에 자동차사고를 당한 경우,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</p> <p>-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.</p> <p>1)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</p> <p>2)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</p>		날개
131		<p>기출</p> <p>개인형이동장치(PM)의 정의</p> <p>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</p>		날개

		<p>거 중 1)시속25km 이상 운행 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2)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</p> <p>종류 1)전동킥보드 2)전동 이륜평향차 3)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</p>		
205		<p>기출 자동차와 보행자 사고 시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수정하는 요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,</p>		날개
206		<p>⑥ 술에 취한 상태 ⑦ 보행자의 급 진입</p>		본문
207	<p>㉘ 정지선 안쪽 —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사고지점이 횡단보도 정지선 안쪽이라면 운전차도 정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감산요수로 적용한다.</p>			본문삭제
212			30점씩	본문
213~236	<p>기출문제 2014이전 삭제</p>			
243			(1) 부상보험금	답안내용

			<p>실제손해액 2500만원에서 을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2,000만원을 공제함 500만원(자기신체사고 부상보험금 한도가 1,500만원이므로 전액지급)</p> <p>(2) 사망보험금 실제손해액 1억8500만원에서 을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8,500만원을 공제함 1억원(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 한도가 1억이므로 전액지급)</p> <p>(3) A에 대한 갑보험회사의 지급보험금 부상보험금 500만원 + 사망보험금1억원 = 1억500만원</p>	
244			<p>(1) 부상보험금</p> <p>1) 치료비 $2,000\text{만원} \times 50\% = 1,000\text{만원}$</p> <p>2) 위자료 $200\text{만원} \times 50\% = 100\text{만원}$</p> <p>3) 휴업손해 $300\text{만원} \times 50\% = 150\text{만원}$</p> <p>4) 합계 1,250만원임. 그러나 치료비 2,000만원에 미달하므로 치료비 2,000만원 전부 지급함. 원래 지급금액은 1,250만원이나 2,000만원을 지급하</p>	답안내용

			<p>므로 추가적으로 발생된 750만원은 사망보험금에서 차감한다.</p> <p>(2) 사망보험금</p> <p>1) 장례비 $500\text{만원} \times 50\% = 250\text{만원}$</p> <p>2) 위자료 $8,000\text{만원} \times 50\% = 4,000\text{만원}$</p> <p>문제에서 채무회를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한 번에 계산. 만약 청구권자별로 위자료를 계산하라면 부모 600만원, 배우자 500만원, 자녀 600만원, 망자 2,300만원으로 계산해야 함</p> <p>3) 상실수익액 $1\text{억} \times 50\% = 5,000\text{만원}$</p> <p>4) 합계 9,250만원에서 부상보험금에서 지급한 750만원으로 차감한 8,500만원</p> <p>(3) A에 대한 을보험회사의 지급보험금 부상보험금 2,000만원 + 사망보험금 8,500만원 = 10,500만원(대인배상1의 부상+사망보험금 한도가 1억8000만원이므로 대인배상1으로 지급)</p>	
--	--	--	--	--

247		(사고당시 대인배상1 한도가 1억원 임. 이해를 돕기 위해 한도를 수정 하지 않음)		1. 갑보험사의 지급 보험금
277			기명피보험자로	문제 <보험계약사항>
278			(1) 병보험회사	2. 약관상보상책임
279			(2) 을보험회사	2. 약관상보상책임
280			(3) 갑보험회사	2. 약관상보상책임
327				2024기출

자동차보험(대인) 정오표(2024.11.28. 현재)

기본서

페이지	수정 전	수정 후	비고
85	대인배상Ⅱ의 고의	대인배상Ⅰ의 고의	
187	라이프니츠계수	호프만계수	2.상실수익액 가. 산정방법
187	라이프니츠계수	호프만계수	날개
249	(4)무면허운전면책약관 a는 대인배상1 무면허운전 사고부 담금을 부담한다	(4) 사고부담금 지급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 로 납부	
250	(2)무면허운전면책약관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승인 이 있었는지 확인한다.	(2) 사고부담금 사고당 1억원 한도의 사고부담금 을 납부한다.	